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5. 8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의자: 전승관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전승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·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
가입 및 지원 조례안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보험 가입, 보험료 납부(안 제3조 ~ 제4조)

- 보험의 보장내용, 보험금 청구 등(안 제5조 ~ 제6조)
- 보험금 지급 제외(안 제7조)
- 교육·홍보 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제정 배경 및 취지

-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되며, 인지적·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돌발적이거나 공격적인 ‘도전적 행동’을 보일 수 있고, 이에 따라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 -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일부 발달장애인 가정은 피해자 치료비 등 손해배상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,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한편, 2024년 9월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, 이 중 서울시 자치구는 5개 구가 해당됨.
- 또한, 성동구는 2025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‘발달장애인 배상 책임보험’을 시행하였으며, 성동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은 1,000명 이하이며, 보험료는 1인당 약 5만원대로 책정하였음(1인당 보험료는 나이 및 직업군에 따라 금액차가 있음)
 - 또한,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실비로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함.
 - 참고로, 7월 기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1,202명으로 파악됨.

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발달장애인’, ‘보호자’, ‘보험’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.
- 안 제3조(보험가입 등)는 피보험자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으로 명시 함.

- 안 제4조(보험료 납부)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보험의 보장내용 등)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·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고, 보험기간·보장금액·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계약 시 정하도록 함.
- 안 제6조(보험금 청구 등)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발달장애인의 신체적·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(보험금 지급 제외)는 타 지자체 전출, 부정한 청구, 기타 법령·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함으로써, 실질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·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아울러 보험 보장내용, 보험금 청구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,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(전승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83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8. .

발의자: 전승관 · 차인영 · 이성수
이예찬 · 정선희(5인)

1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·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
가입 및 지원 조례안

나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보험 가입, 보험료 납부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보험의 보장내용, 보험금 청구 등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보험금 지급 제외(안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보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험”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보험가입 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4조(보험료 납부)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

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.

제5조(보험의 보장내용 등)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다른 사람에

게 입힌 신체·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.

제6조(보험금 청구 등)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의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 지급 제외) 발달장애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·군·구로 전출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
3.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